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44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5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41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10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1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으로 격화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1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9만 6천 명에 달한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만 명 이상이다. 10월 7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139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97명 이상이 가자지구에 포로로 억류돼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이스라엘 공습은 가자지구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거주지 60%, 상업 시설 80%, 학교 건물 85%가 파괴되고, 36개 병원 중 17개 병원만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 통제로 가자지구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있으며,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인 110만 명이 재앙적인 수준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한 서안지구와 레바논으로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일주일 동안 레바논 전역을 공습했고, 이로 인해 1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6천 3백 명에 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에 따라 무력충돌 중이라도 민간인은 보호되어야 하며,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은 오랫동안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중동 지역의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1968년 이후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가능한 빨리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9월 18일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전례 없이 커지고, 인근 지역으로 무력 충돌이 확산되며, 중동지역의 긴장이 급격하게 점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양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 신속하고 대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봉쇄를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역시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이 즉각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한국을 비롯해 유엔 회원국

들이 결의안에 명시된 회원국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중동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의 공습을 중단하고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례없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앙 수준의 인도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에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하였습니다. 5월에도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레바논까지 공습을 확대하며 중동 전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Ⅲ. 검토의견

이재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은 2023년 10월 7일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과 봉쇄 등 조치로 인해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가자 지구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에 더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레바논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무력충돌을 중지하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인질과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함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가자지구 봉쇄를 해제하고,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종식과 레바논 공습 중단을 촉구하려는 것임.

2022년 말 출범한 이스라엘 새 정부가 유대인 정착촌 확대, 가자지구 공습 등 對팔레스타인 강경정책을 펼치면서 2023년 초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자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무장단체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대규모 무력 공격을 기습 감행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보복 공습 및 지상 작전을 지속하여 4만 2천명 이상의 사망자¹⁾와 약 17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였으며, 인도적 상황은 계

1) 2024.10.24. 기준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양측 약 44,047명 사망(이스라엘 1,200명, 팔레스타인 42,847명), 약 109,274명 부상(이스라엘 8,730명, 팔레스타인 100,544명)

속 악화되고 있음.

특히 하마스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병원, 학교, 언론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격과 지상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이에 더해 2024년 10월 8일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지상작전 개시 등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²⁾

2023년 10월 이래 유엔총회 회의 및 안보리 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관련 결의 등도 다수 채택되었음. 유엔총회 차원에서 2023년 10월과 같은 해 12월에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건 채택되었으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즉각적인 휴전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4건(2023년 11월 2712호, 2023년 12월 2720호, 2024년 3월 2728호³⁾, 2024. 6. 2735호⁴⁾)이 채택되었고, 인권이사회의 경우에는 매년 팔레스타인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휴전 협상은 타결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인 사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2) 2024.10.24. 기준 레바논측 2,593명 사망(9.23. 대규모 공습 이후 1,356명 이상 사망), 이스라엘측 84명 사망

3) 2024년 3월 25일 2728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는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한 가자지구 접근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결의안

4) 2024년 6월 10일 2735호, 인질석방 및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분배(1단계),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 및 적대행위의 영구적 종식 요구(2단계), 가자지구에 대한 다년간의 재건계획(3단계)을 포함한 3단계 결의안

한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점령의 불법성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2024. 7. 19.)⁵⁾ 이행을 촉구하는 총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여 동 결의안은 지난 9월 18일 총회에서 채택되었음. 한편 우리 정부는 ICJ의 권고적 의견을 넘어서는 회원국들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기권 표결하였으나,⁶⁾ 가자지구 내 즉각적인 휴전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입장임.

대한민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2728호 공동 문안 주도국으로 참여하고, 안보리 결의 2728호, 2735호 등에 찬성하였으며, 관련 논의 시 휴전 및 인도적 지원 확대 지속을 촉구하였음. 또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올해 3,800만불⁷⁾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 해결에 동참하고 있음.

동 결의안은 이스라엘-하마스 및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

5) 유엔 총회의 권고적 의견 요청(22년 12월)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24년 7월)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불법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적시

- 유엔총회 및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점령 지속을 신속히 종료하기 위한 구체방안과 추가 조치를 강구할 의무
- 이스라엘은 불법 점령을 조속히 끝낼 의무 / 여타 회원국들은 불법적 점령으로 인한 상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점령 지속을 지원·협조하지 않을 의무

6) (9.18. 유엔 총회 결의 요지)

- (OP2) 결의 채택 후 12개월 이내 점령지로부터 이스라엘 철수 요구
- (OP3) 이스라엘의 국제법상 의무 준수 요청
- (OP4) 유엔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의 불법적 점령 결과 불인정, 불법적 점령 지속으로 인한 상황 유지를 지원 및 협조하지 않을 의무 등 국제법상 의무 준수 요청
- (OP5) 유엔 회원국들이 점령지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 등에 대한 對이스라엘 이전 중단, 점령 책임자에 대한 여행금지·자산동결 등 제재 이행 등을 국제법상 의무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

(표결 결과) 찬성 124 / 반대 14 / 기권 43

7) 2024년 1월 800만불, 10월 부터 3,000만불 지원(9.27. 유엔총회 발표)

하며, 인질 석방과 수감자 교환 등 합의를 촉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종식하라는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볼때 관련 당사국에 무력 충돌 즉각 중단 및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21대 국회에서 동 결의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25870호)⁸⁾을 의결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⁹⁾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가자지구 상황의 심각성, 유사입장국 포함 국제사회의 민간인 보호 및 휴전 촉구 여론, 휴전·인질 석방·국제법 준수 등을 통한 민간인 보호, 인도적 지원 확대 등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결의안 추진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다만, 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만을 언급할 경우 실제 범죄자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문안 수정이 필요하며, 레바논에서의

8) 21대 국회에서 2건의 안을 병합하여 대안 반영

- [212528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김상희의원 등 77인)
- [2125130]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하태경의원 등 14인)

9)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의안번호 2125870호)

1.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무분별한 폭력 행위 중단, 인도적 휴전 촉구
2. 민간인 보호,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 요구
3. 민간인의 즉각적 석방 요구 및 안전, 복지 및 인도적 대우 촉구
4. 가자지구 내 안전하고 신속한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 촉구
5.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깊은 우려
6.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따르며 인류애적 가치를 향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

교전은 이스라엘 외에도 헤즈볼라도 상호 교전을 중단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263